

어 황 정 보

봄철의 어황예보

국립수산진흥원

연근해자원조사과장 박 병 하

1. 해 황

한국 연근해에는 난류와 한류, 남해 및 서해의 연안수와 동해와 서해의 고온냉수 등 성질이 다른 몇개의 수괴가 계절적으로 흐르고 있으며, 이들 수괴의 강약에 따라 계절적인 어황이 좌우되게 된다.

금년도의 봄철 해황의 특징을 해역별로 2월의 해양관측결과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동해

표층수온은 10.0~14.0도로서 평년에 비하여 0.1~6.5도의 고온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층은 3.0~14.0도로서 동해중부해역은 고온상이나 동해남부해역은 평년에 비하여 약간 저온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북한한류는 평년에 비하여 약하며, 반대로 난류는 강하게 북상할 것이 예상되므로 동해의 해황은 평년에 비하여 고온상이 지속될 것이 예상된다.

나. 남해

표층수온은 6.7~16.8도로서 평년에 비하여 남해연안 및 제주도 서방해역은 0.1~3.2도의 저온이 었으나 그 이외의 해역은 0.1~1.9도의 고온상을 나타내고 있다.

중층에 있어서도 표층과 거의 비슷한수온을 유지함으로써 남해의 연안해역과 제주도 서방해역은 저온상이나 그 이외의 해역은 0.1~2.0도의 고온상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난류는 평년에 비하여 우세하게 북상될 것이 예상되며, 소리도와 거문도간의 남해안 연안수가 발달함으로써 연안역은 평년에 비하여 다소 저온상이 지속되겠으나 외해측은 고온상이 예상된다.

한편, 남해안 연안수와 대한난류간에 형성되는 수온전선은 제주해협과 대한해협 사이에서 형성될 것이 예상되며 표층과 저층간의 수온분포는 연직혼합에 의해 균등한 양상을 나타낼 것이 예상된다.

다. 서해

표층수온은 2.7~6.8도로서 평년에 비하여 서해 전 해역이 0.1~1.3도의 저온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층에 있어서도 2.7~6.9도의 수온분포로서 표층과 비슷한 해황을 나타내어 평년에 비하여 0.3~1.3도의 저온상을 나타내고 있다.

서해에 있어서는 평년에 비하여 우세한 황해냉수가 북서계절풍의 영향과 상하층의 연직혼합에 의해 서해 전역에 분포하게 되므로 평년에 비하여 다소 저온상태가 지속될 것이 예상된다.

2. 어 황

가. 동 해

한류가 약해지고 난류가 강해지는 시기이므로 명태어업은 종어를 맞아 거의 철망하게 될 것이며, 그 대신 난류를 따라 북상하는 멸치, 쾡치, 오징어 기타 연안성 어류들의 북상이 활발해지는

시기가 될 것이다.

멸치자망어업은 표층수는 12~13도의 수온역을 따라 동해남부의 기장을 중심으로 그 주변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되었으며, 난류의 강세에 의하여 어황은 작년도보다 다소 호전될 것이 예상되며, 동해중부해역에서는 5월중순부터 어장이 형성되었으며, 역시 어황은 전년도에 비하여 호전될 것이 예상된다.

꽂치자망어업에 있어서는 봄철과 가을철의 두 계절에 걸쳐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봄철의 어획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꽂치의 어획량은 '70년대에 있어서는 3~4만톤의 어획으로서 동해에 있어서 명태, 오징어에 이어 3대 중요어종의 하나였으나 '80년대에 들어서서는 어획량이 감소되어 가고 있다.

최근의 동향을 볼 것 같으면, 단위당 어획량의 감소, 어체의 소형화 및 해황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자원은 감소추세에 있어 비록 해황조건이 좋다 할 지라도 자원자체의 양이 적은 관계로 어황은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

연안정치망어업에 있어서는 그 간 몇년간에 걸쳐 난류의 외해복상으로 인하여 연안역의 저수온 현상이 지속됨으로써 저조한 어황을 보였으나, 3~4월에 걸쳐 난류는 연안역까지 확장되어 평년에 비하여 다소 강하게 복상될 것이 예상되므로 정치망에서 대상으로 하는 난류성의 어황은 전년에 비하여 순조로워질 것이 예상된다.

다만 쥐치(말쥐치) 자원은 최근 약간 감소의 징후도 보이므로 해역에 따라서는 다소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남해

4월에 들어서면 남해안은 난류권에 들어서게 되므로 동지나해 남부해역으로부터 복상하는 고등어, 멸치, 정어리, 말쥐치, 삼치 등 다양한 어종들이 산란차 한국연안에 집안하게 된다.

고등어는 최근 안정된 자원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평년상의 어황을 유지하겠으며, 제주도과 대마도간의 조경해역부근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되겠다.

한편 말쥐치도 고등어와 거의 비슷한 수온역에서 서식하고 있으며, 남해의 중부해역에서 월동

하며 4월이후 동해와 서해로 북상하게 되므로 14~16도의 수온대를 따라 어군을 탐색한다면 어황은 평년상을 유지할 것이 기대된다.

정어리는 자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으므로 난류의 강세와 더불어 어획은 다소 빨라지겠으며, 대마도 이남의 남해 동부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되겠으며, 어황은 순조로울 것이 예상된다. 다만, 이들 어종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망어업의 어종 선택이 봄철의 어황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남해안에서 멸치를 대상으로 하는 어업으로서 자망과 권현망어업을 들 수 있다.

멸치자망어업은 3월하순경부터 조업하기 시작하여 6월까지 조업이 계속되겠으며, 중심어장은 부산~거제도간의 남해 동부해역과 남해도와 사랑도를 연결하는 외해측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되겠으며, 어황은 전년도에 비하여 순조로울 것이 예상된다.

한편, 권현망어업의 본격적인 조업은 7월이후가 되겠으나, 4~6월에는 외해측에서 대멸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지겠으며, 역시 어황은 순조로울 것이 예상된다.

오징어낚시어업은 과거 동해에서만 조업이 이루어졌으나 2~3년전부터 서해어장의 개발로 거의 주년에 걸쳐 조업되고 있다.

난류의 복상과 더불어 어군도 북상되는 4월에는 제주도와 대마도간해역에서 어장이 이루어지겠으나 아직 소형 오징어를 대상으로 조업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기대할 수 없겠으며, 5~6월에는 제주도로부터 동해남부해역과 서해남부해역에서 일부 어장이 형성되겠으나 어황은 저조하겠다.

한편, 남해안에서 저서자원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트롤어업은 90% 이상이 말쥐치를 대상으로 조업되고 있으며, 말쥐치는 주년에 걸쳐 제주도와 대마도 주변수역을 연결하는 해역에서 서식하고 있어 순조로운 어황이 기대되나, 최근 자원이 약간 감소추세에 있어 어황은 다소 저조하겠다.

그러나 본격적인 어획은 6월부터 9월에 걸쳐 이루어지겠으며 후반기의 어황은 동지나해 남부어군의 첨가로 순조로울 것이 기대된다.

기타 저인망어업에 있어서는 소코트라를 중심으로한 동지나해 중부해역에서 중심어장이 형성

되겠으나 어군은 산란차 점차적으로 연안역으로 북상하게 되므로 어군의 분산으로 어황은 평년상을 유지하겠다.

다. 서해

서해측은 대부분 저서자원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어업으로서 그 중 안강망어업과 유자망어업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안강망어업은 봄철을 맞이하여 주로 갑오징어를 대상으로 흑산도 주변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되었으며, 난류세력이 서해측은 다소 약하게 북상함으로써 어황은 전반기에는 저조하겠으나 5월 이후 난류와 서해냉수간에 형성되는 조경역에서 갑오징어의 어황은 순조로울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참조기는 최근 자원이 감소된 관계로 어

황의 호전은 기대할 수 없으며, 잡어를 대상으로 평년상의 어황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자망어업에 있어서는 북상하는 조기류, 꽃게를 대상으로 흑산도 주변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되었으나 연안역의 어황은 저조하겠으며, 소코트라 부근어장에서는 6월부터 갈치를 대상으로 조업이 시작되었으며, 어황은 평년상을 유지할 것이 기대된다.

기타 연안어업에 있어서는 난류세력의 북상과 서해 고유냉수의 약화에 따라 어군은 산란차 연안역에 접안하는 시기이므로 본격적으로 꽃게, 대하 및 기타 잡어를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지겠으나 어황은 평년상이상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보험법 개정 - 그 주요 내용은? (1985년 1월1일부터)

● 피부양자 범위에 장인·장모

피보험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장인·장모가 피부양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당원대상

- 배우자(처)의 부모(배우자가 무남독녀인 경우)

○ 동거조건

- 배우자의 부모(배우자의 20세 이상인 남자형제가 없고 여자 형제만이 있을 경우)
- 배우자의 조부모(배우자의 father 없고 또한 father의 형제중 20세 이상자가 없는 경우)

○ 부양조건 대상

- 배우자(처)의 부모
배우자의 20세 이상인 남자 또는 여자 형제가 있더라도 다음에 해당되어 그 부모를 부양할 수 없을 경우
 - 의료보호대상자인 경우
 - 단기하사 이하로 현역으로 복무하는 경우
 - 심신장애자 복지법에 의한 심신장애자인 경우
 - 대학교 이하의 학교의 재학생인 경우
 -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경우
 - 행방불명인 경우
- 배우자(처)의 직계존속
피보험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가 유지됨을 보험자가 확인하고 동학인 사항을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연체가산금의 계산

중대 은행의 연체이자 방식을 공과금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체납기간 90일 이내
* 체납액의 100분의 5
- 체납기간 90일 경과 180일 이내
* 체납액의 100분의 5 가산
- 체납기간 180일 경과
* 체납액의 100분의 5 가산

● 도서·벽지의 보험료 감면

도서·벽지의 거주자는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면하게 됩니다.

● 보험료 체납시 자격상실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피보험자(국민자 제외)가 보험료를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보험급여기간 180일 제한의 완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행은 동일상병의 보험급여기간은 평생 통산 180일이던 것을 상병 구분없이 연간 180일로 완화되었습니다.

● 보험급여의 개시일

자격확인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범위 안에서 보험급여의 개시일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한 급여제한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한 상병에 대하여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